

#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절반 부담…차별 아니다”

## 건보공단, 배달라이더에게 산재보험료 부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자 특성 나타나”

배달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사업주와 절반씩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법률 조항은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5월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라이더로 근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9년 8월께 A씨를 비롯해 각각의 원고가 소속된 사업장에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 등은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자에게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별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며 해당 조항에 근거해 이뤄진

행위는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 등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산재보험료 부담 등에 관해 단계적인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조해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사업자로서 특징이 나타나 근로자와 다르다”고 규정했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

의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특례규정을 제정해 일정 범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법을 적용하고, 그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 산재보험법 특례적용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산재보험 적용제의 신청 규정도 개정을 통해 보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이슬기자



**가짜석유 제조·판매 유통업자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압수한 증거물을 살펴보고 있다.

## 배우 김부선, 이재명 상대 3억 손해송 취하

**“정치적으로 이용당해 미안”**

영화배우 김부선(62)씨가 이재명(59)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약 4년 만에 취하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 측 소송대리인 장영하 법무법인인지디지털 변호사는 지난 8일 서울 동부지법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28일 이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지난 2016년 자신의 트위터에 ‘이 분(김부선)이 대마를 좋아하지 않아...요즘도 많이 하시나’ 등의 내용을 남겼던 것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허인중인 것 같다’고 언급했던 부분 등을 문제 삼아 소송에 나섰다.

다만 김씨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소송 취하를 예고했다.

소송 취하를 결심한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언급했다.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에서 자신을



비방한 사실을 듣고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 의원에게도 “이걸로 끝내자. 그만하자.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 당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 고속도로서 날아온 ‘판스프링’

앞·뒤 유리 뚫고 나가...“다치지 않은게 천운”

‘도로 위의 암살자’라 불리는 ‘판스프링’이 차 앞 유리를 뚫고 들어와 뒷유리까지 박살 냈는데 가해 차량이 그대로 도주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보배드림에는 ‘판스프링 사고를 당했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날 오전 11시에 영동고속도로에서 호법JC로 나와 대전 방향으로 2~3km 정도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차량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내 차량은 1차선에서, 가해 화물 차량은 2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다”며 “철판 막대기가 가해 차량 오른쪽에서 떨어져 나와 내 차 보닛을 맞고 전면 유리를 관통해 트렁크 유리를 뚫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천운으로 유리 파편 뒤집어 써서 찢린 것 외에 외상은 없다. 다만 등승했던 장모님과 짐사람. 딸아이가 많이 놀란 상태”라며 “이제 저녁이 되니 놀라서 그런지 가족이 머리가 몹시 아프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있다니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판스프링은 노면에서 받는 충격 흡수 장치로 차량 하부에 달려있어야 하지만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실으려고 적재함 옆에 끼워 지지대로 사용하시는 일이 많다. 이렇게 불법으로 적재함 옆에 끼워두면 판스프링이 고정되지 않아 운행 중 날아가게 되어 이와 같은 큰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판스프링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크게 다치는 등 인명 피해를 낳고 있지만 불법 장치는 좀처럼 줄고 있지 않다. 특히 이런 사고는 차주들 찾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게 된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불법 판스프링 장착 차량 단속을 위해 2020년 9월 ‘일반형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보조 지지대(고정장치) 설치 튜닝 기준’을 마련했다. 적재함에 보조 지지대를 설치하는 경우, 판스프링처럼 탈부착식은 금지하고, 고정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차량에서 떨어진 부품으로 사고가 났다면 해당 차량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승호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